

## 업무협약서

「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」와 「어린이집안전공제회」는(이하 “협약기관”이라 한다)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내용을 규정한다.

**제2조(기본원칙)** 협약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,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.

**제3조(협력분야)** 협약기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-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-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 제작·배포, 가정연계, 행사 및 홍보 등의 기관별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
-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조(협의조정)** 본 협약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5조(기밀유지)** 협약기관은 협력 분야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 이는 이 협약서의 효력이 종료한 이후에도 동일하다.

**제6조(효력)**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,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**제7조(협약의 해지)** 양 기관은 본 협약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법적 권리 의무)** 본 업무협약은 당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
**제9조(기타)**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8월 11일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
어린이집안전공제회

센터장 이정미

이사장 김영옥

이정미

김영옥